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하천 친수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545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하천 친수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8
1.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절차	8
2.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지구별 지정기준	9

I. 제안경위

2024년 2월 23일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하천 친수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시행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친화적 활용을 위하여 ①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안 제25조제5항), ②시·도지사가 국가하천 친수지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④ (생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u>미리</u>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u>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국가하천에 한정한다)</u> ----- ----- ----- ----- -----.

⑥ ~ ⑧ (생략)

<신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친수지구에 관한 특례)

①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친화적 활용을 위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수립
2.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¹⁾은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며,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²⁾과 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³⁾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구 분	지구별 용어 정의 ⁵⁾
보전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 구역
복원지구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 또는 인위적으로 보존한 지구
친수지구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

- 1) 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2)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4) 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5) 수자원물환경 실무용어사전, 환경부(2021. 12. 5), 84p, 85p, 221p

이에 따라 국가하천 친수지구로 지정된 경우 하천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장 등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친수지구 안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친수시설의 종류⁶⁾]

기능구분	목 적	시설요소
관리시설	도로 및 포장시설	- 자전거도로, 산책로, 진입로 등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 주차장, 음수대, 벤치, 화장실 등
체육시설	운동공간	- 축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조명시설	경관 및 안전시설	- 가로등, 보안등, 보안카메라 등

그런데 최근 수변공간 등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에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며 주거지역에 밀접한 하천의 친수기능을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하천의 경우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친수(親水) 기능까지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②시·도지사가

6) 「주민친화적 국가하천정비를 위한 친수시설 설치·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2019

국가하천 친수지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친수시설을 국가하천 친수지구 안에 설치 및 관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⁷⁾ 상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하천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⁸⁾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국가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1.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절차).

둘째, 안 제45조의2에 대하여 환경부는 국가하천 보전·복원·친수 지구 중 친수지구만 별도로 구분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친수지구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과도한 시설 설치 가능성이 유발되어 유수소통 및 하천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구의 유기적 연결성 및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국가하천 친수지구를 환경부장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협의(協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표준국어대사전)으로, 실무적으로 의견 청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참고자료

1.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구분	개략기간	시행주체	세부내용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안)수립 (법정, 10년주기)	24개월	유역·지방 환경청	-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유역·지방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입지의 타당성 등
	하천기본계획 및 고시	-	유역·지방 환경청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비법정, 10년주기)	24개월	환경부 본부	하천기본계획범위 내 사업지구, 사업량, 사업비 산정
	(500억 ↓) - (500억 ↑) 예비타당성 조사	12개월	본부, 유역·지방 환경청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실시설계(안) 마련	12개월	유역·지방 환경청	- 시설규모, 공법 등 결정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	유역·지방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 자연생태/대기/토지 환경 등
	실시설계 준공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	-	유역·지방 환경청	하천법 제27조 3항
하천공사	하천공사	36개월	유역·지방 환경청	하천법 제27조 6항
	공사준공 및 준공고시	-	유역·지방 환경청	하천법 제27조 7항

참고자료

2.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지구별 지정기준

구 분	개 요
보전지구	○ 「하천법 시행령」 제49조 ①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복원지구	○ 「하천법 시행령」 제49조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친수지구	○ 「하천법 시행령」 제49조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 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함